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534
------------	------

2016. 12. 19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석전문위원

1. 제안경위

- 2016. 11. 17. 우미경·김기대 의원 공동 발의 (2016. 11. 21. 회부)

2. 제안이유

- 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현금청산 대상자와 세입자등에 대한 보상 및 이주 과정에서 당사자 간 충분한 협의 부족으로 일방적인 수용절차와 인도집행 과정에서 강제퇴거로 인한 물리력 행사 등으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음
- 현재 행정지침으로 '사전협의체'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운영시기 및 조합의 소극적 협의로 인한 협의체 운영에 한계가 있으며 이주단계에서의 강제퇴거에 대한 관리도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 이에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대상자 등과 조합 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자진이주를 유도하고 인도집행과정의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불법적인 폭력 행위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관리처분계획서 작성 시 현금청산 및 손실보상 금액에 따른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및 협의체 운영결과 등 협의 경과를 첨부토록 함(안 제25조제3호)
- 구청장은 현금청산자 또는 세입자와 사업시행자간의 이주대책 분쟁을 조정하기 협의체 구성·운영토록 하고, 시장은 세부 운영기준을 정하도록 함(안 제42조의5 신설)
 - 협의체 구성은 사업의 이해당사자간 중재를 위한 위원(공무원 및 전문가)과 참석자(이행당사자)로 구분하고,
 - 특히 위원인 감정평가 전문가와 별개로 해당 구역의 평가를 시행한 감정평가업자를 참석하게 함으로써 감정평가에 대한 기준, 내용 등에 대해 직접 설명하게 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자 함
-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의 원만한 이주 등을 위해 조합 등은 수용재결, 명도소송

및 인도집행 등에 관한 진행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인도집행 과정에 공무원을 입회토록 함(안 제42조의6 신설)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5.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이주대책 분쟁 조정 및 인도집행 과정에서 공공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2016년 11월 17일 우미경·김기대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11월 2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
- 주요 내용은 현금청산대상자·세입자와 사업시행자 간의 이주대책·현금청산·손실보상 등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시 협의체 운영 결과 또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를 첨부토록 하며, 매도청구·수용재결·명도소송·인도집행 등에 관한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인도집행 과정에 공무원을 입회토록 하는 것으로, 이주대책 협의부터 집행까지 이주 과정에 대한 공공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 현행 법령에 의하면(붙임1),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시 주민이주대책,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등을 포함토록 하고,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하도록 하며, 분쟁 발생시에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는 토지수용재결 및 공탁, 명도소송 등을 통해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명도소송 제기를 최소화하고 합의 이주를 유도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행정지침¹⁾으로 사전협의체를 운영토록 해 왔음.
- 즉, 이주대책은 당사자 간의 협의를 우선하되 협의가 안 된 경우에는 토지수용재결 및 명도소송·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협의 유도 및 조정 등 공공의 개입은 사전협의체 및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가능토록 되어 있는데,
현행 사전협의체는 조합이 운영주체로서 공정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제도적 근거가 없어 강제하기 어려우며, 조합원·현금청산대상자·세입자에 대한 권리관계가 모두 정해지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 사전협의체가 운영됨으로써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의식을 토대로 사전협의체를 개선하여 제도화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1)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대책 추진(주택정책실 주거재생과-1419, '13.2.1.)

- 또한, 집행과정의 폭력으로 주민 부상까지 발생한 월계2구역(인덕마을) 등의 사례를 볼 때, 강제집행 과정에 공공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강제퇴거 및 이에 따른 인권 문제, 사회적 문제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도 이해됨.

	사전협의체(행정지침)	협의체(조례안)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근거	서울시 방침(2013.2.1.)	도정조례 (제25조제3호, 제42조의5, 제42조의6 각각 신설)	도정법 제77조의2, 제77조의3
목적	청산자 및 세입자 등과 조합간 충분한 협의 절차를 통해 강제퇴거 예방	현금청산대상자 또는 세입자 등과 사업시행자간의 이주대책, 현금청산, 손실보상 협의 등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의 조정
구성방법	- 구성주체 : 조합 - 구성원 : 조합, 가옥주, 세입자, 공무원 등	- 구성주체 : 구청장 - 위원 : 전문가, 공무원 등 - 참석자: 조합, 감정평가업자, 현금청산자, 세입자,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구성주체 : 구청장 - 위원 : 전문가, 교수, 공무원, 자치구의회의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등
절차	관리처분인가 신청 → 사전협의체 구성·운영계획서 제출 → 미협의를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사업시행인가시 조건 부여)	분양신청 완료 → 협의체 구성·운영(5회 이상) → 미협의를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분쟁당사자 신청 → 조정위원회 조정(60일 이내) → 조정안 제시 → 당사자 수락여부 통보(15일 이내)
운영시기	관리처분인가 시점 ~ 이주 완료 시까지	분양신청 완료일로부터 ~ 관리처분계획 총회 전(필요에 따라 이후도 가능)	별도의 운영시기 없음

* 재생협력과 자료

- 즉, 이 개정조례안은 현행 사전협의체의 실효성을 높여 제도화하고, 강제집행 과정의 공공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된다고 하겠음.
- 다만, 25개 자치구의 사전협의체 운영,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강제집행 현황 등을 살펴보면, 도봉구·구로구·금천구·서초구 등 4개구는 해당 사항이 전무하고, 용산구·강서구·관악구·강남구·강동구 등 5개구는 사전협의체 운영 없이 도시분쟁조정위원회만 운영하여 강제집행이 발생하지 않은 사례로, 해당 자치구들의 경우에는 이 개정조례안의 협의체 운영 규정이 정비사업의 새로운 절차 추가로 인식될 수 있겠음.

<자치구별(2010~현재) 사전협의체 운영,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강제집행 현황>

연번	자치구	관할 정비구역	사전협의체운영 정비구역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정비구역	강제집행 정비구역
1	종로구	7	2	0	2
2	중구	5	2	1	1
3	용산구	12	0	4	0

4	성동구	17	2	1	4
5	광진구	7	1	2	0
6	동대문구	27	4	0	3
7	중랑구	11	1	0	1
8	성북구	41	7	3	0
9	강북구	14	2	0	0
10	도봉구	2	0	0	0
11	노원구	13	1	0	1
12	은평구	34	6	1	3
13	서대문구	30	3	0	0
14	마포구	13	5	4	1
15	양천구	9	2	0	0
16	강서구	7	0	2	0
17	구로구	9	0	0	0
18	금천구	2	0	0	0
19	영등포구	28	4	0	0
20	동작구	21	2	0	0
21	관악구	12	0	1	0
22	서초구	28	0	0	0
23	강남구	22	0	2	0
24	송파구	11	2	1	0
25	강동구	22	0	2	0
계		404	46	24	16

* 재생협력과 자료(붙임2 참고)

- 실제로, 협의체 운영은 일종의 절차적 규제로서 이 조례안에서 임의규정으로 마련하기는 하였으나 정비사업에 사실상 협의·조정 절차가 추가되는 것이므로, 상위법령에 해당 근거가 마련되도록 법령 개정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협의체 운영을 정비사업의 반대주체 등이 사업을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오용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운영기간 명시 등을 포함하여 상세한 운영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주요 쟁점인 상가세입자의 권리금·시설비 등 보상 관련규정이 법령에 마련되지 않은 채 공공이 협의를 유도하고 조정을 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보상 관련하여 법령 제·개정 건의를 병행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됨.

- 한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시 협의체 운영 결과 또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를 첨부토록 하였는데(안 제25조제3호), 구청장이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하는 절차가 선행된 후에 통보 내용을 사업시행자가 첨부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구청장의 통보 절차 규정이 신설될 필요가 있겠음.

부칙 제2조는 이주대책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착공신고 전 모든 구역에 최소 5회 협의체 운영(중전 사전협의체 승계)을 중용하고 있는데, 협의체 운영 취지는 동일할 지라도, 행정지침에 의한 사전협의체와 이 조례안의 협의체는 구성 및 운영시기·방법 등이 서로 다른 만큼, 이 조례안의 협의체는 온전한 신설규정으로 사업시행인가(변경 포함) 신청 구역부터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협이가 완료되지 않은 모든 정비구역에 협의체 규정을 꼭 적용해야 한다면, 부칙 제2조제2항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협의체 구성·운영을 중전 사전협의체를 운영하지 않은 구역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5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신청서 등 작성방법) 사업시행자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 분계획인가 신청서의 작성방법은 다음 각 호 와 같다.</p> <p>1. 2. (생략)</p> <p><신설></p> <p> </p> <p>3. (생략)</p> <p><신설></p>	<p>제25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신청서 등 작성방법)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법 제48조제1항제7호에 따른 세입자별 손실 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과 영 제50 조제1호에 따른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토 지등소유자별 권리명세 및 이에 대한 청산방 법 작성 시, 제42조의5에 따른 협의체 운영 결 과 또는 법 제77조의3에 따른 도시분쟁조정위 원회 조정 결과 등 세입자 및 토지등소유자와 진행된 협의 경과를 첨부하여야 한다.</p> <p>4. (현행 제3호와 같음)</p> <p>제42조의5(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 대상자 또는 법 제30 조제4호에 따른 세입자와 사업시행자 간의 이 주대책, 현금 청산 및 손실보상 협의 등으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법 제46조에 따른 분 양신청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성하 며,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 전까지 5 회 이상 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 도 운영할 수 있다.</p> <p>③ 협의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위원 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이 로 구성한다. 이 경우 협의체의 위원장은 제2 호의 전문가 중 1인을 호선한다.</p> <p>1. 해당 자치구에서 정비사업 업무에 종사하는 6급 이상 공무원</p> <p>2. 법률, 감정평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 분 야별 전문가</p> <p>④ 협의체 회의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가 참석한다.</p> <p>1. 사업시행자</p> <p>2. 법 제48조제5항, 영 제48조에 따라 재산 또 는 권리 등을 평가한 감정평가업자</p> <p>3. 법 제47조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 받는 자</p>

<신 설>

4. 법 제30조제4호에 따른 주거 및 이주대책 수립 대상 세입자

5. 기타 구청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주거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액 등

2. 상가세입자에 대한 영업보상액 등

3. 법 제47조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해서 현금으로 청산 받는 금액(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한 금액) 등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제2항에 따라 협의체가 5회 이상 운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구청장은 법 제77조의3에 따른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다.

⑦ 시장은 협의체 구성 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협의체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2조의6(이주관리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법 제39조에 따른 매도청구, 법 제40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결과, 명도소송의 청구가 있는 경우 그 결과 및 집행법원에 인도집행을 신청하거나 집행일시 지정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도집행 과정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42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착공신고를 완료한 구역은 제외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전협의체를 구성·운영한 경우에는 제42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운영한 것으로 본다. 다만, 5회 이상 운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 운영할 수 있고, 합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이 조례 시행 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된 구역 중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사전협의체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다.

<붙임 1> 관련 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제4조제6항에 따라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4.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제40조(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준용) ①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5조(자료의 제출 등) ②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진위원회·사업시행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철거업자·설계자 및 시공자 등 이 법에 의한 업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조사하는 공무원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사일시·조사목적 등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제77조(감독)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비사업 현장조사를 통하여 분쟁의 조정, 위법사항의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조합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의 제공 등 점검반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제75조제3항의 규정은 제3항의 정비사업 현장조사를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7조의2(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정비구역이 지정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부시장·부지사·부구청장 또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각 2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에서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는 자
3. 변호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4. 그 밖에 정비사업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자

③ 조정위원회는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분쟁 사항을 심사·조정하되, 「주택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사대상에 포함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④ 조정위원회에는 위원 3인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분과위원회에는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77조의3(조정위원회의 조정 등) ① 정비사업과 관련한 분쟁당사자는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기간 내에 조정절차를 마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분과위원회에서 사전 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조정위원회 심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분과위원회의 심사로 조정절차를 끝낼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4조의2(손실보상 등) ① 제11조에 따른 공람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체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의 인정기준, 영업손실 보상대상자의 인정기준 및 영업손실의 보상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8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청산절차) 사업시행자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토지·건축물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손실보상 등) ① 영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인한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하여 손실을 평가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른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해당 정비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4개월 이상의 기간동안营业을 할 수 없는 경우

2.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해당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
으로 인하여 4개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협약)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약하여야 하며, 협약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재결의 신청) ① 제26조에 따른 협약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약을 할 수 없을 때(제
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5조(집행관의 강제력 사용) ① 집행관은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
거·창고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고,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붙임 2> 정비구역별(2010~현재) 사전협의체 운영,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강제집행 현황

연번	자치구	구역명	사업유형	구역지정일	사전협의체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강제집행(건)
					차수	회의날짜	차수	회의날짜	
1	종로구	돈의문1	(뉴)도시환경	'06.04.13.	15	'13.10.15. '13.10.24. '13.11.12. '13.12.05. '14.06.27.	0	-	9
2	종로구	무악2	재개발	'06.03.23.	5	'16.03.11. '16.03.21. '16.05.16. '16.05.19. '16.05.20.	0	-	1
3	중구	만리1	재개발	'09.12.31.	5	'15.10. 중	0	-	0
4	중구	만리2	재개발	'07.10.25.	13	'13.07.08. '13.07.16. '13.09.16. '13.10.01. '13.10.04.	1	'13.01.	5
5	용산구	한남5	(뉴)재개발	'09.10.01.	0	-	2	'12.07. '12.09.	0
6	용산구	용산역전면1	도시환경	'06.01.19.	0	-	1	'13.01.	0
7	용산구	한강로	도시환경	'87.03.09.	0	-	1	'13.06.	0
8	용산구	동자동4	도시환경	'78.11.30.	0	-	1	'15.04.	0
9	성동구	금호15	재개발	'06.10.19.	6	'15.02.03. '15.01.10. '15.02.26. '15.03.10. '15.03.30.	1	'13.07.	4
10	성동구	하왕1-5	재개발	'07.05.17.	0	-	0	-	1
11	성동구	행당6	재개발	'08.12.18.	6	'14.12.24. '14.12.26. '14.12.29. '15.03.09. '15.03.20.	0	-	31
12	성동구	금호20	재개발	'07.02.22.	0	-	0	-	17
13	광진구	구의1	재건축 (단독)	'08.07.03.	27	'14.07.17. '14.08.21. '14.10.02. '15.02.26. '15.04.09.	2	'15.06.24. '15.09.08.	0
14	광진구	대영연립	재건축	구역지정 대상아님	0	-	1	'14.06.	0
15	동대문구	대농신안	재건축 (단독)	'06.04.06.	5	'15.01.15. '15.01.28. '15.02.05. '15.03.06. '15.03.25.	0	-	0

연번	자치구	구역명	사업유형	구역지정일	사전협의체		도시분쟁 조정위원회		강제집행 (건)
					차수	회의날짜	차수	회의날짜	
16	동대문구	답십리18	(뉴)재개발	'08.05.29.	5	'15.11.11. '15.12.02. '16.01.19. '16.02.25. '16.05.03.	0	-	0
17	동대문구	회경2	(뉴)재개발	'08.01.07.	5	'16.01.29. '16.02.12. '16.03.02. '16.03.22. '16.04.14.	0	-	6
18	동대문구	전농11	재개발	'08.09.11.	0	-	0	-	2
19	동대문구	답십리14	재개발	'07.06.21.	0	-	0	-	2
20	동대문구	용두6	재개발	'06.09.1.	1	'16.10.20.	0	-	0
21	중랑구	면목3	재건축 (단독)	'07.09.20.	8	'15.09.17. '15.10.13. '15.10.28. '16.06.21. '16.07.06.	0	-	4
22	성북구	장위1	(뉴)재개발	'06.10.19.	4	'15.10.07. '15.10.21. '15.11.04. '15.12.01.	0	-	0
23	성북구	장위2	(뉴)재개발	'06.10.19.	7	'14.06.20. '14.12.10. '14.12.17. '14.12.24. '14.12.30.	0	-	0
24	성북구	장위5	(뉴)재개발	'06.10.19.	4	'15.10.07. '15.10.21. '15.11.04. '15.12.01.	0	-	0
25	성북구	길음2	(뉴)재개발	'09.01.02.	4	'14.08.07. '14.08.19. '14.09.18. '14.10.06.	1	'15.04.	0
26	성북구	돈암정릉	재개발	'08.08.21.	5회 이상	'13.3~'12 중 수시운영	2	'13.10.17. '13.11.26.	0
27	성북구	보문3	재개발	'06.10.09.	5회 이상	'13.3~'12 중 수시운영	1	'14.02.24.	0
28	성북구	석관2	재개발	'07.08.09.	5	'16.03.03. '16.03.10. '16.03.17. '16.03.24. '16.03.31.	0	-	0
29	강북구	미아4	재개발	'09.05.07.	2	'13.02.21. '13.07.10.	0	-	0

연번	자치구	구역명	사업유형	구역지정일	사전협의체		도시분쟁 조정위원회		강제집행 (건)
					차수	회의날짜	차수	회의날짜	
30	강북구	미아9-1	재건축 (단독)	'07.08.30.	4	'16.06.08. '16.06.14. '16.07.20. '16.09.08.	0	-	0
31	노원구	월계2 (인덕마을)	재건축 (단독)	'08.03.06.	5	'16.04.11. '16.05.16. '16.06.28. '16.07.01. '16.07.05.	0	-	6
32	은평구	불광5	재개발	'08.12.18.	0	-	1	'13.06.	0
33	은평구	녹번1-1	재개발	'07.08.16.	0	-	0	-	10
34	은평구	녹번1-2	재개발	'07.08.16.	5	'15.06.17. '15.06.18. '15.06.19. '15.06.23. '15.06.24.	0	-	24
35	은평구	응암2	재개발	'08.11.16.	4	'16.09.20. '16.09.28. '16.10.12. '16.10.14.	0	-	0
36	은평구	응암3	재건축 (단독)	'09.10.29	5	'15.07.02. '15.07.09. '15.07.17. '15.07.27. '16.01.08.	-	-	0
37	은평구	응암10	재개발	'07.09.06.	5	'16.07.22. '16.08.01. '16.08.11. '16.08.30. '16.09.12.	0	-	4
38	은평구	응암11	재개발	'10.03.25.	2	'16.09.26. '16.10.17.	0	-	0
39	은평구	수색4	(뉴)재개발	'08.05.22	5	'16.05.30. '16.06.08. '16.06.17. '16.06.24. '16.07.05.	0	-	0
40	서대문구	홍은12	재개발	'07.06.07.	3	'14.03.19. '14.03.21. '14.04.04.	0	-	0
41	서대문구	홍은14	재개발	'09.04.02.	1	'16.08.30.	0	-	0
42	서대문구	홍제2	재개발	'07.06.07.	5	'15.08.24. '15.09.01. '15.09.14. '15.09.15. '15.09.18.	0	-	0
43	마포구	상수1	재개발	'07.07.19.	0	-	1	'12.02.	0
44	마포구	용강3	재개발	'08.06.26.	0	-	2	'13.07. '16.06.	0

연번	자치구	구역명	사업유형	구역지정일	사전협의체		도시분쟁 조정위원회		강제집행 (건)
					차수	회의날짜	차수	회의날짜	
45	마포구	아현1-3	재개발	'10.04.22.	1	'16.07.26.	0	-	0
46	마포구	대흥2	재개발	'07.12.27.	11	'16.08.12. '16.08.22. '16.08.26. '16.09.01. '16.09.30.	3	'12.02.22. '13.07.05. '16.06.27.	0
47	마포구	염리2	(뉴)재개발		0	-	2	'15.10. '16.05.	4
48	마포구	염리3	(뉴)재개발	'07.06.14.	10	'16.06.15. '16.06.23. '16.06.29. '16.07.13. '16.08.26.	0	-	0
49	마포구	신수1	재건축 (단독)	'09.10.29.	3	'15.11.23. '15.12.07. '15.12.18.	0	-	0
50	마포구	창전1	재건축 (단독)	'06.06.02.	1	'15.12.22.	0	-	0
51	양천구	목1	재건축 (단독)	'11.07.28.	7	'16.06.10. '16.06.13. '16.06.15. '16.06.20. '16.06.21.	0	-	0
52	양천구	신정1-1	(뉴)재개발	'05.11.24.	2	'15.04.21. '15.04.23.	0	-	0
53	강서구	긴등마을	재건축	'05.10.13.	0	-	1	'15.12.24.	0
54	강서구	방화6	재건축 (단독)	'10.03.25.	0	-	1	'16.08.10.	0
55	영등포구	신길5	(뉴)재개발	'07.11.29.	4	'16.09.30. '16.10.04. '16.10.07. '16.10.11.	0	-	0
56	영등포구	신길12	(뉴)재개발	'07.11.29.	2	'16.06.30. '16.07.29.	0	-	0
57	영등포구	신길14	(뉴)재개발	'07.11.29.	5	'16.06.21. '16.06.28. '16.07.05. '16.07.12. '16.07.19.	0	-	0
58	영등포구	당산4	재개발	'07.08.02.	3	'14.07.03.'14.07 .11. '14.08.07.	0	-	0
59	동작구	사당2	재건축 (단독)	'09.02.05.	5	'16.02.15. '16.02.17. '16.02.19. '16.02.22. '16.02.24.	0	-	0

연번	자치구	구역명	사업유형	구역지정일	사전협의체		도시분쟁 조정위원회		강제집행 (건)
					차수	회의날짜	차수	회의날짜	
60	동작구	상도10	재개발	'06.12.14	5	'13.05.20. '13.05.27. '13.06.13. '13.06.13. '13.08.09.	0	-	0
61	관악구	봉천4-1-3	재개발	'11.02.24	0	-	1	'16.10.08.	0
62	강남구	청실A	재건축 (공동)	'10.02.25	0	-	5	'12.07.24. '12.08.17. '12.09.17. '13.07.18. '13.08.07.	0
63	강남구	개포시영A	재건축 (공동)	'12.10.25	0	-	1	'14.04.26	0
64	송파구	거여2-1	(뉴)재개발	'07.10.22	2	'16.09.21. '16.10.11.	0	-	0
65	송파구	거여2-2	(뉴)재개발	'07.10.22	5	'16.07.15. '16.07.19. '16.07.22. '16.07.26. '16.07.28.	0	-	0
66	송파구	풍납우성A	재건축 (공동)	'76.08.21.	0	-	2	'12.06. '14.04.	0
67	강동구	둔촌주공A	재건축 (공동)	'06.11.02	0	-	1	'16.06.28	0
68	강동구	고덕3단지	재건축 (공동)	'09.09.24	0	-	2	'15.04. '16.11.04.	0

※ 사전협의체 운영 5회 이상인 경우 최초 5회 개최일자 기입